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법」 상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장면 연출
등이 동일한 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면제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13호)

2026. 3.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법」상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장면 연출 등이 동일한 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면제(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2
2. 부칙: 적용례의 신설 필요성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5.

다. 회 부 일 : 2026. 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업자는 해당 영화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고편 영화와 광고영화도 이에 포함되어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TV를 통해 시청자에게 공개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상영등급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광고영화 또는 「방송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방송법」상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장면 연출 등이 동일한 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면제(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편집·제작한 광고영화(이하 “방송광고영화”라 함)에 대하여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방송광고영화 등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방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u>심의규정 및 같은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u>

현행	개정안
② ~ ⑨ (생략) ⑩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방법, <u>내용정보</u>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이하 “방송광고”라 한다)와 핵심 장면·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편집·제작한 광고영화(이하 “<u>방송광고영화</u>”라 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 -----<u>방송광고영화의 판단 기준·절차, 내용 정보</u>----- ----- ----- -----. 제29조의2(<u>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u>) ① 영화업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u> 1.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u>방송법</u>」 등 관계 법령에 따라 <u>광고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방송광고영화</u> 2. 「<u>방송법</u>」 제100조제1항에 따라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u>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u>방송광고영화 및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심사</u>

현행	개정안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29조¹⁾에 따라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과 광고영화²⁾를 포함함)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 2의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 ~ ⑥ (생략)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⑧ ~ ⑩ (생략)

2) ‘광고영화’는 영화상영관 등에서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영상으로서 해당 영화와 무관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함.

다만, 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③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④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는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영화의 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되는 반면, 광고영화는 ‘전체관람가’로만 분류되고,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경우에만 상영할 수 있음.³⁾

하계 각종 상품·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상업광고(CF)를 의미하며, 영화상영관 등 외에서 게시되거나 방영되는 각종 영화 포스터 및 영화 홍보영상 등을 의미하는 ‘영화에 관한 광고’와 구별됨. 광고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대상인 반면, ‘영화에 관한 광고’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의 대상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① **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제6조(관람등급) ①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한편, 「방송법」 제86조제3항4)에 따르면 TV 등 방송으로 송출되는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방송 전에 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음.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는 자율 사항이나, 방송 이후에는 같은 법 제32조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⁵⁾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바, 방송사업자는 대부분의 방송광고를 사

-
1.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3.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4.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② 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은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분류한다.
- ③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항제1호에 한하여** 분류한다.

4) 「방송법」

제86조(자체심의) ①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5)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를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에 자체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방송광고를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법상 ‘광고영화’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이에 따라 영화업자 등은 방송광고를 「방송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심의를 거쳤음에도 영화상영관에서 광고영화로 상영할 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⁶⁾.

이에 개정안은 ① 「방송법」 제33조제1항⁷⁾에 따른 심의규정 및 같은 법 제86조제3항⁸⁾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이하 “방송광고”라 함)와 핵심 장면·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편집·제작한 광고영화인 “방송광고영화”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면제하되, ② 해당 방송광고영화가 ^{②-1}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방송

6) 광고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 받기 위해서는 영상자료 1편 및 대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영상물의 길이를 기준으로 5분당 6,5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 1~2일의 시간이 소요됨.

7)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8) 「방송법」

제86조(자체심의) ①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광고영화인 경우 또는 ②-2 「방송법」 제100조제1항9)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인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방송광고 및 광고영화에 대한 중복 심의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영화산업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특히, 최근 5년간(2021~2025년) 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현황을

9)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살펴보면 전체 13,063건 중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광고영화는 13,025건이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체관람가로 분류되지 못한 광고영화는 38건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를 거친 광고영화에 대하여 상영등급분류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도별 광고영화 상영등급분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 체	평 균
계	1,426	3,011	2,828	3,137	2,661	13,063	2,612.6
전체관람가	1,425	2,998	2,824	3,124	2,654	13,025	2,605
유해성있음*	1	13	4	13	7	38	7.6
처리기간**	1일	1일	1.6일	2.2일	1.8일	-	-

* 음주장면, 흡연장면, 사행성 조장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대부업, 사행성 게임 광고 등

** 광고영화 등급분류 처리기한: 7일(영등위규정)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개정안은 상영등급분류 면제의 예외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방송광고영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¹⁰⁾는 단란주점영업, 도박 등 방송광고 금지 상품 및 용

10)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역을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의2¹¹⁾는 주류광고 또는 대부업광고의 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방송광고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보다 분명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한 방송광고영화”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
 -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 8. 조제분유, 조제우유
 -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 9의2. 성기구(성적 만족감 충족을 목적으로 제작·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및 그 밖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관련 용품
 -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 11. 안마시술소
 - 12. 삭 제
 - 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 14. 삭 제
 - ③ 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방송광고 시간의 제한) ① 주류광고 또는 대부업광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주류

가. 텔레비전 방송광고 : 07:00 - 22:00

나. 라디오 방송광고 : 17:00 - 익일 08:00. 다만, 08:00 - 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2. 대부업

가. 평일 : 07:00 - 09:00, 13:00 - 22:00

나. 토요일·공휴일 : 07:00 - 22:00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을 포함한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의약품의 방송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① 영화업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① ----- ----- ----- -----.
1. <u>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방송광고영화</u>	1. <u>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한 방송광고영화</u>
2.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	2.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영화 및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심사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영화업자의 행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임.

또한, 광고영화는 현행법에 따라 전체관람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경우에도 방송시청시간 제한을 전제로 송출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여 방송광고영화 중 특정한 경우에는 상영등급분류 면제 대상의 예외로 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임.

다만, 법적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상영등급분류 면제의 예외 대상을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시간 제한을 받는 특정 업종의 방송광고영화’로 구체화하여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²⁾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12)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420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8.1. 회부

2. 부칙: 적용례의 신설 필요성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상영등급분류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제29조제9항13)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 등급분류증명서 등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영등급분류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전제되어야 함.

같은 법 제29조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인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제19조 및 별표2¹⁴⁾에 따르면 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의 처리기한은 7일임.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고, 상영등급분류 처리 기간 경과 중에 개정안이 시행된 경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14)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제19조(처리기한)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 및 추천 등의 접수시 일정 등을 예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 및 추천 등을 접수하여 결정·통보하기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이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물량의 폭주 등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처리기간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처리기한분류(영화)

구 분	내 용	처 리 기 간
영 화	등급분류	10일
	영화예고편·광고영화	7일
	광고선전물 청소년유해성여부 확인	7일

우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영등급분류가 면제되는지,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림] 사례: 개정규정 적용 여부에 관하여 불명확한 경우



따라서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 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379